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830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8. 27.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8. 2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9. 10.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)

가. 제안이유

○ 2024. 12월 준공되는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을 위해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 선정 제반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에 만전을 다하고자 함.

나. 위탁근거

○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(다함께돌봄센터) 제2항

○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○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제4조

다. 주요내용

1) 시설개요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종사자	정원	시설현황	비고
신규 위탁	고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	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170-1	85㎡	2명	20명	놀이공간, 활동실 사무공간, 조리실 등	

2) 위탁기간: 위탁일로부터 5년간(2025. 1. ~ 2029. 12.)

3) 위탁내용: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관리・운영 전반

4) 수탁자격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

5) 소요예산: 94,511 천원

- 인건비: 80,711천 원(시설장 1명, 돌봄선생님 1명)
- 운영비: 13,800천 원(관리비 및 프로그램비 등)

6) 선정방법: 공개경쟁

- 공개모집 → 서류심사 →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등 심의
- 최고・최저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최다득점 위탁기관

※ 70점 미만시 재공고 실시, 동점 경우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, 수탁자의 적격성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
7) 위탁조건

- 수탁기관은 아동복지법 및 기타 관계법령,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, 위·수탁계약서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
- 수탁기관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-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서에 의함

라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

1)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
- 초등돌봄은 운영시간 및 돌봄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(보호자)의 욕구 및 선호도가 다양하여 사업에 대한 민간의 유연한 대처 필요
-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필요

2)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위탁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에 기여하고인건비·운영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강화

3) 경제적 효율성,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- 해당 사무는 비영리사무로 돌봄에 대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

4)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- 민간이 가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이 가능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실현, 틈새 돌봄 기능 강화

5)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서비스 이용률, 예산의 집행률,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 성과측성 용이

6)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예·결산 정보공시 및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

마. 추진일정

1) 2024. 8.: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민간위탁 및 운영 위탁체 선정 계획 수립
2) 2024. 8.: 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제출
3) 2024. 10.: 위탁체 모집 공고(20일간) 및 신청서 접수
4) 2024. 11.: 서류심사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, 위탁체 선정 공고 및 통지
5) 2024. 12.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장혜정)

○ 2024. 12월 준공예정인 고성군 가족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○ 동의안 내용 검토

-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

◦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함.

- 민간위탁 기간의 적정성

◦ 위탁 기간을 2025. 1. ~ 2029. 12.(5년)로 한 것은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14조제2항과 관련하여 적정함.

- 수탁기관 선정방법의 적정성
  ◦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.

- 위탁사업비의 적정성
  ◦ 위탁사업비 94,511천 원은 2024년 다함께돌봄사업 내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적정함.

○ 민간위탁 근거와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,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　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